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재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이 정 주

Brain Injury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ung Joo Lee, Ph.D.

Hanmaum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Brain Injury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vocational evaluation difficult, but through a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positive results can be obtained. In addition to the brai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f they utilize a variety of schemes to obtain professional help. For example, sheltered workshop, enclaves employment, homebound employment, reserved employment, work activity centers; Sheltered employment, Supported employment, Transition is that employment. Brain Injury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irst to build job skills assessment system, brain injury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strengthen vocational and medical rehabilitation,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the Indians and an occupation requiring. (Brain & NeuroRehabilitation 2011; 4: 83-87)

Key Words: employment, supported employment, transition, vocational rehabilitation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

직업은 인간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은 개인의 삶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리의 삶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제로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다.

특히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뇌에 손상을 경험한 장애인의 경우 작업현장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직업에 임하는 태도나 열의 그리고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보통의 작업현장의 특성상 신체적 기능, 직업적 기술적인 면 등 외형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뇌손상 장애인은 운동 기능 장애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잠재력이 과소 평가되어 취업이 어렵고 또한 취업이 되더라도 직업적응과 고용안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¹

직무가 체계적으로 확실히 분화되지 않은 작업현장에서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작업

현장에 많이 사용되는 상지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지 장애는 뇌손상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상지장애는 기질적 장애에 의한 일차적 증상인 경우도 있고 과도한 근육 긴장에 의해 또는 발달의 지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 상지의 장애는 지각기능, 운동기능, 파지기능, 조작기능, 도달기능, 지지기능 등 상지관련 기능을 어렵게 함으로써 직업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를 힘들게 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1,3}

상지기능의 장애와 더불어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언어장애이다. 언어장애는 발음기관의 협응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르는 조음장애, 언어중추의 장애에 따른 실어증, 정신지체에 따른 언어발달의 장애, 환경적 박탈에 따른 언어발달 장애, 청력장애에 의한 언어장애 그리고 정서적 불안이나 긴장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한 심인성 언어장애 등 다양한 원인과 양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뇌손상 장애인은 약 70%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⁴

또한 뇌손상 장애인은 신체적 측면에서 지구력과 근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동작의 효율성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동시에 그 효율성도 매우 저하되어 있다.

적당한 정도의 손 기능과 기능 기술 그리고 의사소통

교신저자: 이정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0-1

☎ 463-817,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Tel: 031-725-9538, Fax: 031-725-9510

E-mail: jjlee153@naver.com

*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책임연구원

기능 등은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언급될 만큼 직업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직업재활을 저해하는 기본적 원인이다.

뇌손상 장애인 중에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상적 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장애인 즉 자조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고용에 의한 직업재활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뇌손상 장애인의 일반고용을 통한 직업재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조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위에서 제시한 적당한 정도의 손 기능, 의사소통 기능, 기능적 기술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구력과 근력을 갖추어야 한다.

뇌손상인도 극소수 최종증장애인(individuals with a significant disability)을 제외한다면 정확한 직업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직종과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직업을 구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뇌손상인의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적절한 평가와 종합치료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3,4}

이 때 직업재활사는 뇌손상인의 흥미와 능력을 일치시켜야 한다. 뇌손상인의 이러한 직업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어릴 때부터 재활치료에 있어서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적 원인으로 생기는 근육의 긴장감 완화를 위한 심리치료(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가 상당히 중요하며, 성인이 되어 직업을 찾을 때는 대체로 대 근육을 요하는 직종이나 정신적 노동(사무직, 첨단하이테크 산업관련 업종)을 하는 직종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³

뇌손상 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

1)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보호고용이란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여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는 노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특정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된 고용의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인 보호고용의 형태로는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 기업 내 집단고용(enclaves employment), 재택고용(homebound employment), 유보고용(reserved employment system), 작업활동센터(work activity center) 등을 들 수 있다.

(1)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

보호작업장은 일반적으로 통제된 작업환경과 개인적인 취업목표를 가진 작업지향적 재활시설로 뇌손상인을 포

함한 중증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작업경험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생산량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를 제공해 주는 재활시설이다. 이러한 보호작업장의 목적은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가 중중이기 때문에 경쟁고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장애인에게 특별한 조건하에서 유상의 일(remuneration work)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⁵

1976년 미국 노동부에서 조사한 보호작업장 실태조사 보고서인 그린레이 협회(Greenleigh Association)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보호작업장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작업장은 재활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장애와 관련된 문제나 재활기관의 수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보호작업장은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과 직무배치를 위해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보호작업장은 보수가 지급되고 보호고용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보호작업장의 기능을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능적인 직무기능과 작업습관을 익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기업 내 집단고용(Enclaves employment)

기업내 집단고용(enclaves employment)도 보호고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뇌손상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개방된 기업체에 개별로 취업시키지 아니하고 기업 내에 집단으로 고용하여 생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별취업에 따른 부적응의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일반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장점이 있어 나온 제도이다.⁴

(3) 재택고용(Homebound employment)

일반사업체에 통근이 곤란한 뇌손상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로써 기업체에 통원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집단에서 또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⁵ 재택고용은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작업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주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장애인을 생산인력으로 전환하여 자립시키고, 나아가 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신체적 장애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지적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전문직종에 취업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뇌손상인은 재택고용을 잘 활용하여 직종개발을 한다면 획기적인 고용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4) 유보고용제(Reserved employment system)

유보고용제(reserved employment system)는 특정 장애인에게 특정 직종을 유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보고용 제도는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기 직종에 대해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44년 영국의 장애인 고용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프랑스,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나 침술 등의 유보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유보고용 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확보해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특별한 직종만이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이 저 임금의 단순한 직종에 국한되기 쉬운 것 등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나 뇌손상 장애인에게는 정확한 직업평가를 통해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유보고용제도를 실시하면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고용제도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볼 때, 뇌손상 장애인에게는 고용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5) 작업활동센터(Work activity center)

작업활동센터(work activity center)는 중증 뇌손상장애인을 위시한 장애정도가 매우 심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작업장으로 여기에서 소속된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높은 작업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적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작업활동센터는 중증장애인이 보다 높은 작업수준에 도달하도록 생산성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에 대한 자신감이나 신변자립 훈련, 사회적 행동과 같은 일상생활 수행기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보호작업장의 절반이상이 작업활동 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활동센터의 23%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다.⁶

2)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미국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획기적인 변화는 1986년 재활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제도이다.

지원고용은 뇌손상 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일반고용에의 접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에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직업재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1990년 중반 경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고용이란 “경쟁적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심한 장애

로 인해 고용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경쟁적 고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도 직업을 갖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고용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흥미와 능력을 파악하고 사업체에 대한 고용가능성의 조사와 직무분석을 통해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 나간다. 지원고용에서는 장애인과 일반인과의 직업적, 비 직업적 교류를 강조하여 어떤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경쟁고용으로 가능하게 한다.

3) 전환고용(Transition employment)

뇌손상 장애인을 포함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있어서 또 다른 고용모형은 1990년대 이후 각광받고 있는 것이 전환고용(transition employment)제도이다. 전환고용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14세에서부터 18세까지의 중증장애인에게 특수교사와 재활상담사(rehabilitation counselor), 기업이 긴밀히 협조를 하여 학교에서 곧 바로 직장으로 전환시키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전환이란 중고등학교에서 고용 상황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과정으로 주로 청소년 말기나 성인 초기에 일어나는 하나의 복잡한 직업재활과정이다. 미국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은 전환고용을 폭넓은 서비스와 경험을 통해 졸업 후 취업에 이르게 하는 성과중심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미국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은 전환고용의 유형을 ① 장애와 관련된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없는 전환 ② 직업재활 서비스나 다른 재활기관에서 전환고용과 관련된 제한된 서비스가 필요한 전환 ③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고용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환 등 세가지로 분류하였다.⁵ 전환고용의 중요한 부분은 장애학생들의 개별화된 전환고용 계획(individualize transition plan)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개별화된 전환고용 계획은 특별한 형식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 education plan) 개발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절차와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⁷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제언

1) 직업적 능력평가 체계의 구축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신체적·기능적 측면은 손 기능, 의사소통 기능, 기능 기술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 요인은 대부분 장애특성에 따른 귀속적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직업재활 여부를 가능하는 결정 요인으로 직업재활 과정에서 경쟁적 일반 고용 및 보호고용의 선택을 위한 기본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직업생활에서 어려움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 등에 근거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뇌손상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²

2)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1) 일상생활 능력 강화 훈련

뇌손상 장애인은 자립적으로 일상생활 동작을 직접 수행하기는 하지만 특정 능력에 있어서는 느리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동, 자조활동, 주변환경 설비와 보장구의 활용, 의사소통 그리고 기타 자기관리 등 제반 영역 중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의 능력에 대한 강화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근력 강화 훈련

뇌손상 장애인은 신체적 측면에서 근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근육강화훈련의 효과성이 여러 임상보고를 통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직업재활단계에서 채택함으로써 뇌손상 장애인의 일반적 직업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기술 훈련

뇌손상 장애인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생활 영역이 다소 제한됨에 따라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이 저하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장면에서 대화기술, 사회적인지 기술 그리고 특정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업생활에서의 적응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보조공학의 활용

뇌손상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 저하는 구체적인 작업에서 지원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적절하게 극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과정에는 반드시 지원기기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뇌손상 장애인의 저하된 능력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의 경우 지원 기기의 개발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직업재활 가능성의 확대는 다소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또는 간단한 기기를 직접 고안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뇌손상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3,8}

3) 직업재활과 의료재활의 연계

뇌손상 장애인이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측면은 손 기능의 부족에 따르는 어려움이다. 또한 일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근력과 지구력 저하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신체적 능력의 제한은 뇌손상 장애인이 직업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또한 취업 이후 지속적인 어려움의 원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장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속적인 의료 재활 노력에 의해 상당부분 완화 내지 해소될 수 있다. 현재 뇌손상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학적 기법이 새로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임상적 효과가 인정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뇌손상 장애인 인력을 구축

뇌손상 장애인은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직업적 능력 및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당한 평가에 대처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사업체 및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인적 자원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다.³

5) 유보고용 등 고용 활성화 방안

현재 상당수의 뇌손상 장애인은 일반고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일부는 보호고용을 통해 근로기회를 갖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근로기회마저 상실한 채 집이나 수용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실시된다면 자신의 직업적 잠재력을 발휘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거하여 직업적 능력이 부족한 뇌손상 장애인을 일반 고용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⁹

(1) 유보고용 및 우선고용

직업생활이 매우 어려운 특정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직종에 대해 배타적 진입 또는 우선적 진입을 인정하는 제도가 유보고용 또는 우선고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시각장애인 안마직종이 유보고용에 의한 유일한 직종이다. 그러나 중증의 뇌손상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못지 않게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뇌손상 장애인의 잔존능력에 근거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최소의 직종을 노동시장의 형평 등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유보고용 또는 우선고용 제

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부분근무 및 직무부담

뇌손상 장애인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전체적으로 수행할 능력은 없지만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뇌손상 장애인과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근무 및 직무부담은 일상적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뇌손상 장애인이 자신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직업생활에 참여하게 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원고용

뇌손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직업재활 실무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을 활성화하는 효과적 제도로서 폭넓게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뇌손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⁵

참 고 문 헌

- 1) Kim SS. *A study on the vocational aptitude of brain damage*. A doctoral dissertation. Ph.D. Dissertation. Dankook Graduate School; 1995
- 2) Kim JI. *Occup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subject of middle certificate stamp body disabled person and brain disease disabled person. Failure type by deepening process delay and brain disease disguise child section*. Seongnam: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2001
- 3) Lee HY. *Affects in personal quality, occupational training, and occupationa satisfactory this occupational maintenance duration of worker failure type by employment: Worker brain disease arm in center*. Social welfare politic. Seoul: Korea academy of social welfare policy; 2008;32:109-134
- 4) Lee HS, Kim KA, Kim TY, Oh JE. *About work experience and the craving an advanced age disabled person research: Brain disease disguise child in center, Disability and Employment*. Seoul: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2007;17:55-79
- 5) Kang WY, Na UH. *Introduction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Seoul: House of Nanum; 2008
- 6) Kim H, Kim HS, Lee KJ. *A severely disabled person occupational ability development excellent instance*. Seongnam: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2005
- 7) Lee DY.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Science*. Seoul: Hyeong Sul publishing company; 1997
- 8) Lee KJ, Jo SH. *The investigation research for the occupational territory extension of the brain damage disabled person*. Seoul: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1998
- 9) The Employment Security Research center. *Brain damage disabled person Employment Seminar Information package*; 2004